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연장에 방화막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855호, 2022. 5. 3. 공포·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방화막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모·형태 구조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방화막 설치 대상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9조의7)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1천석 이상),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고,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부합하는 등 방화막이 공연장의 건축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연장 운영자가 방화막 설치를 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제2항)
-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의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는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것
2. 방화막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의4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의7에 따른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제23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기준

별표 4 제2호 가목·나목·다목·라목·자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종전의
파목·하목·거목·너목은 하목·거목·너목·더목으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하목·거목·너목·더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 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제 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 1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다. 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 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 1호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원
라.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 2호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원
자. 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 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 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파. 법 제1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 3호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원
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 2호			
1)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거.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 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제 2호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연소자 유해 선전물의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 4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의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는 액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을 것 2. 방화막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방화막 설치로 인한 하중 증가가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내력의 기준에 부합할 것 ② 공연장 운영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아야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2. (생략) 3. <신 설> ⑤ (생략)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4. (생략) 5. <신 설> ② (생략)	한다.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의7에 따른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1.~4. (현행과 같음) 5.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기준 ② (현행과 같음)
--	---